

■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imsm.kcg.go.kr>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개정 2025. 12. 19.>

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)	
신청 기관·단체	명칭	운영 예정 교육과정 [] 수상구조사 1급·2급 모두 [] 수상구조사 2급만	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소재지 (전화)		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)	

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·시설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)	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